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69

발의연월일: 2024. 7. 2.

발 의 자: 권성동・인요한・송석준

엄태영 · 김기현 · 신동욱

조정훈 • 이종욱 • 박충권

윤한홍ㆍ강선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었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에서 실제 선거 이후 부작용이 심해 폐지한 바 있음.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의 원칙(2:1)에 의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매번 공룡선거구 획정으로 인 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기준 없이 선거구 의 통합 또는 분구가 이루어져 선거구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선거구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의2제3항).
- 나.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 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3항 후단 중 "제25조제1항"을 "제2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에는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 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을 "해당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각각 "의석정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의석정수"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
①・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3
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	
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	
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	
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	
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u>제25조제1항</u> 의 기준에 명백하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	
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	
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하기

③ (생략)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u>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u> 배분한다.

- 1. · 2. (생략)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 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위하여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 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에 는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 인구 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 ① -----

- 1.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 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 로 나누어 산출한다.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 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 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 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_

```
의석할당정
                당이 추천
연동배
          국회
                하지 않은
          의원 -
 분
    = [ (
                지역구국회
의석수
          정수
                의원당선인
      해당 정당의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해당 정당의
    - 지역구국회의원당 ] ÷ 2
      선인수
```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 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 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 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 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 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 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잔여배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 의석수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 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 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 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 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 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 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 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 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 호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의 = 비례대표국회 x 연동배분 석수 의원 의석정수 x 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 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 누어 산출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 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 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 (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 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

- ④ ⑤ (생 략)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 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 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 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 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 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 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 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 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 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 · ⑧ (생 략)

가 같은 때에는 당해 성당 사	
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6	
<u>의석정수</u>	
<u>의석정수</u>	
<u>의석정수</u>	
<u>.</u>	
⑦ · ⑧ (현행과 같음)	